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0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권향엽 · 강준현 · 김동아
박지혜 · 최민희 · 김 윤
문진석 · 김남근 · 박지원
이주희 · 안태준 · 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신문하는 경우”를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을 “신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발달장애인 식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별지표의 구성요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별지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가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①·② (생략)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 나----- ----- 신청에 따라----- ----- -----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발달장애인 식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

<신 설>

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별지표의 구성요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별지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

제42조(벌칙) <신 설>

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가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①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생 략) <u><신 설></u> <u>2. (생 략)</u>	<u>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 ----- ----- -----. 1. (현행과 같음) <u>2.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u> <u>3. (현행 제2호와 같음)</u>
---	---